

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8] <개정 2021. 9. 16.>

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(제20조의4 관련)

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.

항 목	산 정 기 준
인건비	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단가 중 "건설 및 기타" 부분을 적용하며, 중급기술자 2명의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
출장비	현지 확인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, 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.
모든 경비	인건비의 50% 이내로 한다.
검사비	검사장비의 사용 비용,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.